

# 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| 625,383,950 | 18,761,519 |
| 일반회계           | 500,792,100 | 15,023,763 |
| 특별회계           | 124,591,850 | 3,737,756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| 124,591,850 | 3,737,756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| 10,529,501  | 315,885    |
|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  | 727,381     | 21,821     |
|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  | 744,572     | 22,337 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| 137,219     | 4,117 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   | 6,193,415   | 185,802 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| 4,383,600   | 131,508    |
|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  | 1,290,169   | 38,705     |
|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  | 8,270,440   | 248,113    |
|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    | 89,531,052  | 2,685,932  |
|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    | 2,784,501   | 83,535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18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2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세, 조정교부금,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